#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49

발의연월일: 2024. 10. 17.

발 의 자:김태선·박 정·이훈기

장철민 · 김태년 · 윤종군

한민수 · 박홍배 · 정준호

김주영 • 이기헌 • 이용우

박균택 • 이학영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 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 기업들이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를 몰래 소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각되는 재고 의류는 원칙적으로 폐의류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소재별 코드로 의류를 배출해 재고 처리 과정을 숨기고,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실제 소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폐기하기로 결정된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제2조제3호의2 신설 및 제17조제2항).

법률 제 호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사업장 재고폐기물"이란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로 결정된 제품을 말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사업장폐기물의"를 "사업장폐기물 및 사업장 재고폐기물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의2. "사업장 재고폐기물"이란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폐기로 결정된
	제품을 말한다.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
무 등) ① (생 략)	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장폐기물배출자는 <u>사업장폐기</u>	사업장폐기물
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	<u>및 사업장 재고폐기물의</u>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